



장수군
JANGSU COUNTY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정기 제425호 2019. 11. 1(금)

훈령

장수군 훈령 제 566호 장수군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 1

입법예고

장수군 공고 제 2019 – 980호 장수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
 장수군 공고 제 2019 – 986호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6
 장수군 공고 제 2019 – 988호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5

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 2019 – 419호 하천공사 준공고시 40
 장수군 고시 제 2019 – 114호 장수 군계획시설(도로/중로3-3,3-4호)도로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42

회 람							

발행 장 수 군 (편집 기획조정실 ☎ 063-350-2065)

장수군 훈령 제566호

장수군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

장수군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19년 11월 1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수군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서비스 개선 및 민원인과의 분쟁을 해결하고 부정한 녹취사용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행정전화 녹취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장수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전화 녹취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행정전화에 의한 당

- 사자 간의 통화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 “녹취정보”란 당사자 간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말한다.
 3. “당사자”란 행정전화를 매개로 한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정보통신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5. “사용부서”란 시스템을 사용하여 당사자 간의 녹취정보를 발생시킨 부서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설치장소) 시스템의 설치장소는 장수군청 내 통신실에 둔다.

제5조(책임자 및 관리자 지정) 시스템의 책임자 및 관리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시스템의 정책임자: 관리부서의 장
2. 시스템의 부책임자: 관리부서의 담당팀장
3. 시스템의 관리자: 업무 담당자

제6조(시스템 사용자) 시스템의 사용자는 행정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장수군청의 모든 직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으로 한다.

제7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당사자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의 녹취정보는 제3자가 채록하거나 재생할 수 없다.

제8조(녹취 시 사전고지) 녹취를 하려고 할 때는 통화 상대자에게 녹취함을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 내용은 녹취정보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녹취정보 열람, 제공 및 절차) ① 당사자 간의 녹취정보는 시스템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타인에게 열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에게 열람 · 제공되는 경우
 3.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4. 문서로 요청한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문서로 요청한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녹취정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당사자 신청을 받은 후 관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녹취자료 인수 · 인계증을 작성하고 서명 후 열람 · 제공할 수 있다.
- ③ 녹취정보는 당초 요구한 목적을 달성한 경우 즉시 파기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녹취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녹취정보 관리) ① 시스템에 녹취되어 있는 자료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보관기간에 따라 1년간 보관하고 이후에는 자동 삭제한다. 다만, 녹취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관리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반드시 타인이 청취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 등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누출 책임은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에 준하여 당사자에게 있다.
- ③ 관리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접근 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이 경우 도난 · 누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 관리적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스템 내의 녹취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재생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시스템 사용 제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리부서의 장이 시스템 사용 제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취정보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누출시킨 사람
- ② 제8조에 따른 사전고지를 이행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
- ③ 업무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결재	담당자	부책임자	정책임자

장수군 행정전화통화 녹취정보 (열람, 제공) 신청서

신청인	성명 (기관·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녹취 정보	녹취일시		녹취 전화번호		
신청용도			당사자와 관계		
신청사유					

「장수군 전화통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녹취시스템의 녹취정보를(열람, 제공)하여 줄 것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기관·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

첨부 서류	「장수군 전화통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 제9조제1항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류
-------	---

[별지 제2호서식]

녹취자료 인수·인계 증

1. 녹취자료 내용

시 스텝	설 치 장 소	녹취 파일 수	자료 인수 목적	비 고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본청 2F 통신실			

2. 수령일자 : 년 월 일

3. 서약 사항

본인은 상기 녹취자료를 인수함에 있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열람·제공하지 않고, 녹취자료 관리 및 취급에 있어 녹취시스템 운영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당 기관(본인)에서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녹취자료의 처리

본 녹취자료는 당초 요구한 목적을 달성 시 본 자료를 폐기하며, 결과 통보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인	소 속 :	
수	직 급 :	
자	성 명 :	(서명)
인	소 속 :	
계	직 급 :	
자	성 명 :	(서명)

[별지 제3호서식]

녹취자료 활용 및 파기 결과 통보서

1. 녹취자료의 내용

시스템	설치장소	녹취 파일 수	자료 인수 목적	비고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본청 2F 통신실			

2. 녹취 자료 활용 결과 및 파기 여부

자료 활용 결과	자료 파기 여부	비고
<input type="checkbox"/> 증거활용 / 기록물 보존 <input type="checkbox"/> 경찰 등 타기관 이첩 <input type="checkbox"/> 자료 파기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파기 - 소속 : - 성명 : <input type="checkbox"/> 미파기(사유) <input type="checkbox"/> 증거활용 / 기록물 보존 <input type="checkbox"/> 경찰 등 타기관 이첩 <input type="checkbox"/> 활용 진행 중 <input type="checkbox"/> 연장요청(기간 / 파기예정일) (/)	

3. 녹취자료의 처리

녹취자료를 제공받아 당초 요구한 목적을 달성하여 위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장수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장수군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녹취정보(열람, 제공) 관리대장

제425호

군

四

2019. 11. 1(금)

1. 제정이유

장수군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서비스 개선 및 민원인과의 분쟁을 해결하고 부정한 녹취사용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책임자 및 관리자 지정(안 제5조)
- 나. 녹취정보의 열람, 제공 및 절차(안 제9조)
- 다. 녹취정보의 관리(안 제10조)

장수군 공고 제2019-980호

장수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계획

장수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자격 정비(안 제4조제4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3의제2항 위원의 해임, 해촉 사항 반영

3. 향후계획

가. 입법예고 : 2019. 10월 중(20일 이상)

- 나.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조례안 의회 제출 : 2019. 11월중
- 다. 도 입법상황보고 및 공포 : 2019. 12월 한
- 라. 개정안 시행 : 공포일

4. 따로 붙임

-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다. 관련법령 1부

5. 의견제출

-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별지서식1 참고)를 장수군수 (참조 : 주민복지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 할 곳 : (주소)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주민복지실 드림스타트팀(전화 : 063-350-2126,
FAX : 063-350-5704)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 군 홈페이지 게시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함

6. 기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주민복지실 담당자 한동호 (전화 : 063-350-2126)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 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조례 제 호

장수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군수는 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설치 등) ① ~ ③(생 랙) <u>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p> <p><u>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u></p> <p><u>2. 질병,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u></p> <p><u>3.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u></p>	<p>제4조(설치 등) ① ~ ③(현행과 같음)</p> <p><u>④ 군수는 위원이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 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u></p>

관계법령**「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3(각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장수군 공고 제2019-986호

이 시행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장수군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장 수 군 수

1. 조례명 :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제정이유

- 상위법령에 따라 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 식당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 위원 규정 변경 (안 제4조)
 - 구성인원 : 9명 이내 → 5인 이상 15인 이하
 - 위원자격 : 상위법령의 자격기준 적용

○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횟수 변경 (안 제6조)

- 년 1회 → 분기별 1회 이상

○ 식당 이용료 변경 (안 제13조 별표 2)

- 1식 1,000원 → 1식 2,000원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12일까지 장수군수에게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의견제출 방법 4)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1) 우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10 장수군수(주민복지실장)
- 2) 팩스 : 063-350-5703
- 3) E-mail : cappuccino27@korea.kr
- 4) 장수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 5)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5.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주민복지실 담당자(전화 : 063-350-21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 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이용자 대표
3. 시설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 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제1항 중 “년 1회”를 “분기별 1회 이상”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별표 2의 식당 이용료 “1,000원”을 “2,000원”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생 락)</p> <p><u>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u></p> <p><u>③위원은 주민복지실장과 행정지원과장과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4.12.29. 규칙 제1048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관련 단체 · 법인 등에 소속된 사람</u> <u>2.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u>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④(생 락)</p> <p><u>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로복지팀장으로 한다.<개정2014.12.29. 규칙 제1048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u></p>	<p>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현행과 같음)</p> <p><u>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u>③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시설의 장</u> <u>2. 시설 이용자 대표</u> <u>3. 시설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u> <u>4. 시설 종사자의 대표</u> <u>5.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u> <u>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 주민</u> <u>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u> <u>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p>④(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운영위원회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u>년 1회</u>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p> <p>②(생 략)</p> <p>[별표 2] 노인복지관 이용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ext-align: left;">시설명</th><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구 분</th><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이 용 료</th><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비 고</th></tr> </thead> <tbody> <tr> <td>식 당</td><td>1 식</td><td>1,000원</td><td>※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무료</td></tr> </tbody> </table>	시설명	구 분	이 용 료	비 고	식 당	1 식	1,000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무료	<p>제6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 <u>분기별 1회 이상</u> ----- ----- -----.</p> <p>②(현행과 같음)</p> <p>[별표 2] 노인복지관 이용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ext-align: left;">시설명</th><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구 분</th><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이 용 료</th><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비 고</th></tr> </thead> <tbody> <tr> <td>식 당</td><td>1 식</td><td>2,000원</td><td>(현행과 같음)</td></tr> </tbody> </table>	시설명	구 분	이 용 료	비 고	식 당	1 식	2,000원	(현행과 같음)
시설명	구 분	이 용 료	비 고														
식 당	1 식	1,000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무료														
시설명	구 분	이 용 료	비 고														
식 당	1 식	2,000원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운영위원회)**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2. 1. 26.〉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 서는 아니 된다.

-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3>

1. 3개 이내의 시설일 것
 2. 같은 시·군·구에 있을 것
 3. 모두 거주시설이거나 모두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 가. 거주시설: 거주자 정원이 20명 미만일 것
 - 나.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의 특성, 이용자 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9.6>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8.3>
-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9.6, 2008.3.3., 2010.3.19.>

장수군 공고 제2019-988호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장수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독립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유족) 등을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에 추가하고 연령제한을 삭제함으로써,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유족 등의 자긍심 제고와 군민의 애국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보훈단체를 통한 사전확인과 신청 대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보훈단체 용어가 반복 사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용어의 정의 규정에서 이를 삭제 함(안 제2조)
- 나. 호국보훈수당 신청자격과 관련, 연령제한 삭제 및 대상자 추가 확대
 - 1) 신청 시 뿐만 아니라 수당 지급 시 까지 주민등록과 거주요건을 갖추도록 명문화 하여 실거주자에 대해 지급하도록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현행 65세 이상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급대상을 확대 함(안 제3조제1항)
 - 2) 호국보훈수당 지급 대상자에 독립유공자(본인 또는 수권자) 및 특수 전임무유공자(본인 또는 배우자)를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대상자를 확대(안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 다. 해석상 불분명한 규정 정비 및 한자식 표기어 순화(안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1)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자는 보훈대상자(상이군경, 6.25 · 월남참전자 등) 본인 1명으로 하되,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 2) 한자어 “자”를 “사람”으로 순화하여 표기
- 라. 2가지 이상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이중지급을 할 수 없도록, 중복 지급 금지 규정을 명문화 함.(안 제4조제1항)
- 마. 보훈처를 통해 보훈대상자 해당 여부 등 자격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종 전의 호국보훈수당 신청 시 미리 해당 보훈단체의 확인 날인을 받아 보훈단체를 통해 대행신청을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하고 번거로운 신청절차를 생략 함(안 제5조제1항)
- 바. 안 제3조에 따른 연령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연령요건 충족에 따른 지급기준일 규정을 삭제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 나. 기타 : 규제사무 없음

4. 향후계획

- 가. 입법예고 : 2019. 10월 중(20일 이상)
- 나.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조례안 의회 제출 : 2019. 11월이후
- 다. 도 입법상황보고 및 공포 : 2019년 12월 한
- 라. 개정안 시행 : 공포일(단, 추가지급대상자의 수당지급은 2020년
부터 적용 시행)

5. 의견제출

-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불임서식 의견서를 장수군(주민복지실)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수(주민복지실장)
 - 팩 스 : 063-350-5703
 - E-mail : kmslaw@korea.kr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주민복지실 희망복지팀(전화 063-350-2071)
으로 문의바랍니다.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 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조례 제 호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호국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현금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부터 지급일 현재까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자와”를 “사람 및 사망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 및”을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보훈청에 등록 된 수권자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상자는 지급”을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를 “제39조 등에 따라 해당 법률에 따른 권리가 소멸하거나 적용대상에서 배제 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에서 배제 된 사람.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 된 사람.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수군 호국보훈수당”을 “수당”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가”를 “수당 지급대상자가 배우자,”로, “가족”을 “수권자”로 한다.

①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월 8만원을 지급하되, 제3조제1항 각 호 중 2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일지라도 중복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 ② 수당 지급신청은 1회로 하되, 제7조에 따른 지급중지 후 재 전입 등의 사유로 다시 수당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이 조례에 규정한 수당은 지급대상 단체”를 “수당은 지급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단체별 신청 내역”을 “신청내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개정규정, 제3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호국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현금을 말한다.</p> <p>2. “단체”란 보훈단체를 말하며 대한민국 상이군 경회 장수군지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장수군지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장수군지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장수군지회, 대한민국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장수군지회, 6.25참전유공자회 장수군지회, 월남참전유공전우회 장수군지회와 이에 준하는 보훈단체를 말한다.</p> <p>제3조(지급대상)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자로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인정하는 다음 대상자로 한다.</p>	<p>제1조(목적)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등에 따라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호국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현금을 말한다.</p> <p>1. 삭 제 2. 삭 제</p> <p>제3조(지급대상)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부터 지급일 현재까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현 행	개 정 안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u>자와 그 배우자</u>	1. ----- ----- --- <u>사람 및 사망한 경우</u> ----- -----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u>자 및 배우자</u>	2.----- ----- <u>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u>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u>사람 및 사망한 경우 보훈청에 등록 된 수권자</u>
〈신 설〉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u>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u>
② 다음 <u>대상자는 지급</u> 에서 제외한다	② --- <u>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u> -----
1. · 2. 삭 제	3.-----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u>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u>	----- <u>제39조 등에 따라 해당 법률에 따른 권리가 소멸하거나 적용대상에서 배제 된 사람</u>

현 행	개 정 안
〈신 설〉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에 따른 적용대상에서 배제 된 사람.
〈신 설〉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 된 사람.
제4조(지급액) ①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 되. 지급액은 1인당 월 8만원으로 한다. ② 제3조에 해당하는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 급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 라 사망위로금으로 유족에게 30만원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 가 유족 또는 가족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급액) ①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월 8만원을 지급하되. 제3조제1항 각 호중 2이상 에 해당하는 사람일지라도 중복지급하지 않는다. ② ----- 수당 ----- ----- ----- -----. ---수당 지급대상자가 배우자, ----- 수권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지급신청)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단체 대표에게 제출하고, 해당 단체의 대표 는 신청서를 취합하여 1차로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신청서의 확인자란에 날인하여 장수군수(이하 “군 수”라 한다)에게 일괄 신청한다.	제5조(지급신청)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장수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현 행	개 정 안
<p><u>② 수당 지급신청은 1회로 갈음한다.</u></p> <p>제6조(수당지급)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수당은 지급대상 단체의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하되, 매 분기말 월(月)에 일괄 지급할 수 있다. 단, 지급 기준일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며,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 한다.</p> <p>② 군수는 지급대상 단체별 신청내역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한 후, 회원 개인별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p>	<p><u>② 수당 지급신청은 1회로 하되, 제7조에 따른 지급중지 후 재 전입 등의 사유로 다시 수당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u></p> <p>제6조(수당지급) ① 수당은 지급대상자 ----- ----- ----- ----- ----- . 〈단서 삭제〉</p> <p>② ----- 신청내역 ----- ----- ----- ----- .</p>

관계법령**「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현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

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률을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률을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 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

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
을 받은 사람

14. ~ 18. 생략
②. ~ ⑥. 생략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
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419호

하천공사 준공고시

「미호천 강외지구 등 3개소 하천정비사업」중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가막리 일원의 「가막지구 하천정비사업」 및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일원의 「신기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준공내용을 「하천법」제2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미호천 강외지구 등 3개소 하천정비사업(가막지구, 신기지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하천의 치수 및 안정성 확보

- 국가하천 연안의 농토 및 인가를 홍수피해로부터 사전에 예방
- 효율적인 하천의 관리, 이용, 보존 및 주민의 생활기반 등 항구적 안정성 확보

- 나. 개 요 : 가막지구 및 신기지구 하천시설 정비
– 가막지구 : 하천제방 827m, 배수문 1개소 등
– 신기지구 : 하천제방 985m, 배수문 1개소, 배수통관 1개소 등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가막지구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가막리 일원
- 신기지구 :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착 수 일 : 2017년 3월 6일
- 준 공 일 : 2019년 10월 13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계재 생략

- 편입토지 국유재산으로 변경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1,5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계재 생략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8. 폐천부지 발생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8조 및 제27조 제5항에 의함

장수군 고시 제 2019-114호

장수 군계획시설(도로/중로3-3,3-4호)도로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장수 군계획시설(도로/중로3-3,3-4호)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장 수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960번지 일원 ((구)KBS중계소 부지)
 - 중로 3-3호, 3-4호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명 칭	사업규모	비 고
군계획시설사업(도로)	장계 복합문화센터 기반시설 (도로/중로3-3, 3-4호)	도로개설 $L=204m, B=12m$	

3.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장수군수
- 주 소 :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2020.12.30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불 입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열람장소 : 장수군청 건설교통과(350-2578)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가. 장계 복합문화센터 기반시설 도로개설사업(중로3-3, 3-4호)-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m ²)		소 유 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계	12필지			21,445	2,595					
1	장계면 장계리	960	잡	3,441	458	장수군				중로3-3
					482					중로3-4
2	장계면 장계리	527-30	잡	5,109	500	장수군				중로3-3
					37					중로3-4
3	장계면 장계리	961	대	1,517	451	장수군				중로3-4
4	장계면 장계리	963	잡	1,750	77	장수군				중로3-4
5	장계면 장계리	527-31	대	407	14	장수군				중로3-4
6	장계면 장계리	867	도	483	40	장수군				중로3-4
7	장계면 장계리	873	임	1,021	190	장수군				중로3-4

군보발행안내

◎ 군보 발행 안내

- 군보는 매월 1일, 15일자로 정기 발행됩니다.(휴일의 경우 익일 발행)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외 발행
- 군보의 법적 우선효력을 종이군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군보게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장수군보발행규정 제9조(게재절차)
- 원고 접수 마감 : 매월 10일, 25일
- 군보게재 의뢰 방법 : 게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송부